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5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박수영・김기현・이만희

백종헌 · 안철수 · 곽규택

서일준 · 정성국 · 김상훈

배현진 · 김대식 · 권성동

조지연 · 정희용 · 김승수

강승규 • 박형수 • 조승화

서천호 · 이종배 의원

(20인)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 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위원 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약 절반이 반도체 기술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부에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국내 기술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인재 육성 및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는 다른 주요 국가보다 미흡한 실정임.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여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 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함(안 제9조).
- 라.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

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 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 자.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제4항).
- 차.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안 제20조).

-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함(안 제25조).
- 타.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조항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 파. 사법경찰관리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음(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을 포함한다) 등을 설계·제조·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소재· 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 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 2. "반도체클러스터"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의 설치·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지원,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 다.
- 제5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 2.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국가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4.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 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 8. 국가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10. 국가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11.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 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보호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반도체산업본부)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 부를 두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3.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 가 의제 사항
- 9.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④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 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

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 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 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 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시·도지사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반 도체산업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 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가 해당 기반시설을 직접 구축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1.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반도체클러스터까지의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도로
-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 시행자가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 따 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 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 제16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반도 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2.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 3.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 별로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 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 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①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는 국가반도체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국가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할 수 있다.
 - ②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 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 ③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 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9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사업
 - 2. 제16조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 3.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국가반도 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차입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③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 5.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 6.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 7.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8. 국가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사업
- 9. 국가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 10.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11.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1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3.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4.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1조(국가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국가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 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 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 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 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가반도체산업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 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

- 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가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 · 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2.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3. 국가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 5. 국가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 6. 국가반도체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7. 그 밖에 국가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 업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 가반도체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보유자가 해당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8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29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8 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국가반도체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제3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벌칙) ①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제33조(예비·음모) ①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28조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이전에 설치가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